

몰법(沒法) 대한민국의 결과론적 궤변에 관한 헌법적 논평: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헌정학적 진단 -

1. 서론 (Introduction)

지방자치단체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정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본 논평이 다루는 헌법적·법리적 위반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당일 선거 현장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고갈 사태는 특정 격전지 및 유권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선거 당일 오후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유권자의 집중과 선관위의 사전 수요 예측 실패가 맞물려, 투표소 현장 배치 물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힌 채 발길을 돌리거나 수 시간 동안 투표소 현장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파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일부 투표소에서 일시적인 투표용지 수급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는 대규모 유권자 이동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배분의 오차일 뿐이며, 전체 선거의 유효성이나 당락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공식 발표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선거 관리 의무 위반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에 불과하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단 한 표라도 사장(死藏)되었다면, 이는 선관위의 해명처럼 '기술적 오차'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주권자의 참정권 침해라는 구체적 법 위반 행위다.

따라서 선관위가 발표한 사태의 경위와 규모는 그 자체로 행정의 무능

을 자인하는 증거이자, 이 논평이 지적하는 '결과론적 수치로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자리매김한다.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일시적인 물류 공급의 실패로 치부될 수 없는 엄중한 헌법적 사태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소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표용지 고갈로 인해 참정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던 참담한 현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반헌법적 폭거이자 헌법적 절차 관리 실패의 구조적 증거인 반헌법적 통치 불능의 표상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선거 행정의 부실이라는 외형을 넘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수년간 고착화되어 온 정권 운영의 불법성과 법치주의가 무력화된 무단통치(無斷統治)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 결과다.

결국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표방하지만 실상 사법부, 언론, 독립적 헌법기관들을 시녀화하며 자의적 권력을 휘둘러온 '근본적인 불법 정권'의 연속성이 주권자의 표를 담아낼 종이 한 장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파행을 낳은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이와 같은 헌정 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본 논평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의 본질적 가치와 '과정의 정의(Procedural Justice)'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결과론적 궤변의 위헌성을 규명하고, 헌법기관들의 제도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2. 헌법적 권리와 절차적 정의 (Constitutional Rights and Procedural Justice)

1) '결과론적 수치'에 의한 '헌법적 절차' 왜곡의 위헌성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주권자의 참정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가 전체 선거 결과나 당락에 미치는 수치적 영향력과 완전히 무관하게, 모든 주권자의 권리가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선거관리 세력은 "해당 지역의 표가 전체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핵심 변수가 아니므로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소수에 속하는 유권자의 표는 국가가 임의로 박탈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극단적인 도구주의적 발상이며, 참정권을 조건부 권리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궤변이다.

표 한 장이 가지는 고유한 등가성(Equal Value)과 실질적 가치는 결과와 상관없이 절차적 정의 내에서 상존해야 하므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적 정당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된 것이다.

2) 과정의 정의(Procedural Justice)와 무단통치의 본질

법치주의 체제에서 과정의 정의는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법적 기초다. 결과의 동일성이 과정의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다는 원칙은 헌법학의 확립된 기본 명제다.

아무리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당선자라 할지라도, 그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박탈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출범한 권력은 헌법적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헌정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세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지배되는 무단통치 체제로 전락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치 권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헌법적 절차와 제도를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해 온 연장선상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실 공급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경시하는 정권의 오만과 무책임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3) 선거권의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의 관계론

국내외 학술 담론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의 관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정의론에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의 개념을 통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더라도 절차가 공정하게 구성되고 준수된다면 그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 역시 올바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논증하였다.

이를 선거 제도에 대입하면, 선거라는 절차 자체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관리될 때에만 그 결과로 출범한 정권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절차의 흠결을 결과론적 수치로 사후 정당화하려는 발상은 롤스적 정의론의 기초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리적 왜곡이다.

국내 헌법학계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들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을 단순한 ‘권력 창출의 도구’나 수치적 계산에 종속되는 기능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실현하는 ‘본질적·절대적 기본권’으로 파악한다.

국내 헌법학 논문들은 국가가 행정적 편의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을 차단하거나 투표 기회를 물리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이자 공무원의 중대한 헌법적 직무유기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기존 학계의 헌법학적 연구 성과와 정치철학적 담론에 비추어 볼 때, 과정의 정의가 상실된 권력이 어떻게 무단통치(無斷統治)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위헌적 사례로 진단된다.

3. 국제적 민주주의 기준과의 비교 (International Standards of Democracy)

국제 선거 표준의 관점에서 행정적 편의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닌, 선거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가 발간한 주요 선거 관찰 보고서들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특정 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Ballot Shortage) 사태나 투표소 접근성 제한을 민주적 선거 기준에 대한 심각한 불이행 사례로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특히 물류 공급의 실패나 불완전한 행정적 대처로 인해 유권자가 정당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국가적 선거들에 대해, ODIHR은 '모든 유권자에게 차별 없이 투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선거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국제 사회는 이러한 행정적 결함이 "전체 당락이나 선거 결과에 정량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당국 정부의 사후적 변명을 결코 용

인하지 않으며,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불비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면 그 자체로 선거의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정당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엄중히 선언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국제적 민주주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헌성과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국제인권규약(ICCPR)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행정적 결함이 발생하여 일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로 국제 규범 위반임을 의미한다.

베니스위원회 선거 기준은 선거의 자유, 평등, 보편성, 비밀성, 직접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이러한 원칙 중 ‘보편성’과 ‘평등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OSCE/ODIHR 선거 관찰 지침 역시 선거 과정에서 행정적 결함이 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주면 선거의 정당성에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의 표가 전체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결과론적 정당화는 국내 헌법뿐 아니라 국제적 민주주의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과 권리 보장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국제 사회의 민주주의 평가 기준에서도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4. 결과론적 정당화 논리의 오류와 역사적 병치 (The Fallacy of Consequential Justification)

사태를 은폐하려는 세력이 내세우는 “투표용지 부족 지역의 표가 전체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전개되었던 논리적 왜곡과 완벽히 동궤를 이룬다.

당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이 부족한 7~8인 체제였어도 결과적으로 만장일치 파면 선고였으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식의 궤변으로 절차적 흠결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 두 사건은 형식적 논리와 헌법학적 실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완벽한 모순적 동질성을 공유한다.

첫째, 형식적 논리의 측면에서 과거 탄핵 심판 체제의 궤변은 재판관 1인의 공석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음에도 어차피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8인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현재 6·3 선거 참사에서 특정 지역의 투표용지 조기 고갈로 인해 주권자가 배제되는 반헌법적 파행이 일어났음에도 어차피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산술적 총량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선거 결과가 유효하다고 강변하는 정권 세력의 논리와 일치한다.

둘째, 헌법학적 실체의 측면에서 과거 재판관 1인의 공석은 단순한 수치적 결손을 넘어 헌법재판부 전체의 '질적 균형을 파괴'한 행위였다.

사법적 정의와 확고한 법리적 논지를 지닌 재판관 1인의 부재는 재판부 전체가 정치적 격랑이나 군중심리에 휩쓸려 내릴 수 있는 실질적 위법 판단을 이성적으로 제어하고 차단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참사 역시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그 소수의 표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형성되었을 전체 선거의 공정성과 '표심의 질적 역동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헌법은 단순한 다수결이나 결과론적 수치가 아닌, 공고한 '헌법 수호의 논리'와 형평성을 요구한다. 탄핵 심판 당시 만약 공석이었던 그

부족한 1인이 헌법 수호와 사법적 정의에 관한 확고한 법리적 논지를 지닌 재판관이었다면, 나머지 8인의 재판관이 정치적 격랑이나 감정에 치우쳐 실질적 위법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리적 논쟁과 정의로써 제어하고 차단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즉, 소수의 부재는 단순한 수치적 결손이 아니라 판결과 선거라는 헌법적 행위의 전체 질적 균형을 붕괴시키는 실질적 정의의 부재를 초래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투표용지로 인해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표가 비록 정량적 총수에서는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의 표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형성되었을 전체 표심의 역동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질적 영향력'은 산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다.

과거 법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수치의 힘으로 정당성을 날조했던 사법적 과오가 오늘날 "소수의 표는 무시해도 선거는 유효하다"는 거대한 헌정 참사로 변형되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5. 선거관리제도의 책무와 헌법기관의 제도적 책임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가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아무런 물리적 장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갖추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

투표용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참정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주권자 보호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다.

따라서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사법·헌법기관들은 이 사태를 단순한 하위 행정기관의 기술적 오작동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선거의 기본 절차가 전면적으로 훼손된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권과 선거 관리 세력을 상대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특별 처분과 사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가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

6. 결론 (Conclusion)

2026년 6월 3일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수치상의 표 차이나 결과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한 위헌이자 헌법적 효력의 상실 사유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수치적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과 철저한 권리 보장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정당화의 논리로 실질적 정의를 덮으려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비합리적 논리와 궤변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불법적 정권의 자의적인 무단통치와 반헌법적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강력한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나 주권자의 권리와 대의는 영원하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현 정권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며, 국민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적 저항권을 행사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6월 4일

헌법수호단 대표 박상구